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의의와 영향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국제사회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2003년~2005년), 유엔총회(2005~2007년)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택하여 왔다. 유엔인권기구들이 공식적으로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유엔인권기구와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금년도 제63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찬성 95, 반대 24, 기권 62)되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개최될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에서도 북한 내에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에 대한 협조, 인도기구의 자유로운 접근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해 결의안과 비교하여 금년도 결의안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남북정상 회담과 10·4선언을 지지한다는 지난 해 결의안 내용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둘째, 인권을 유린하는 책임자에 대한 비처벌(impunity) 문제를 다루고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비탄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금년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억제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일부 비정부기구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번 결의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북한 내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와 개성공단 등 노동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기 때문에 금년도 결의안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방북을 거절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결의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 대화와 기술협력조차 거부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당국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데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문서이다. 유엔 회원국이면서 4대

국제인권협약의 가입 당사자인 북한이 유엔의 인권개선 요구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거부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개방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고립을 탈피하고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정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인권분야에 대해 유엔과 협력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첫째,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주제별 특별보고관, 규약위원회 전문위원의 방북 허용 등 유엔의 특별절차와 규약위원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둘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 대화 및 기술협력을 수용해야 한다. 셋째, 국제인도기구의 접근 등 인도지원활동의 자유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북한당국이 인권분야에서 유엔과 협력적 자세로 전환할 경우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향후 북미, 북한-유럽연합 등 양자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바마 신 정부는 핵문제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우선 유엔인권기구와 협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결의안의 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불참, 기권, 찬성 등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 논의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찬성을 넘어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일본 등과 함께 51개 공동제안국의 하나로 참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하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여 왔다. 이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인권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원칙을 실천으로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우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당국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명분으로 공동제안국 참여를 활용하고 있다. 11월 12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문구마저 삭제하게 함으로써 선언존중이라는 가면까지 벗어던지고 반공화국 대결적 정체를 드러냈다”고 비난하였다. 이어서 노동신문은 11월 18일 ‘사태 악화를 키질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결의안에 포함돼 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을 빼도록 암암리에 뒤공작”을 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표는 결의안 채택에 앞선 발언을 통하여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의 전면적 부정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북정상선언 지지 문구가 빠지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진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을 통해 대북적대라는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진의가 입증된 만큼 ‘파국적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인권문제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풀어 나가는데 부정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양자관계에서 인권은 명분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정치·경제적 이해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인권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반발과 무관하게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전략적 고려와 분리하여 일관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투명성 제고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역시 다른 사안과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